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2/전송(02)796-4487
기획정책국장 최길만(6552)/ 의료정책팀장 이병인(6537)/ 과장 김성호(6532)/ E-mail: popowe0@hanmail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676-15885호

시행일자 2023. 3. 31.

수　　신 수신처 참조

참　　조

제　　목 IMS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6도928) 관련 안내

1.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과 지자체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, 최근 IMS (intra-muscular stimulation: 근육 내 자극 요법) 판결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동요하지 마십시오.

2. IMS 에 대한 대법원 판결(2021년 12월 30일)은 해당 회원의 행위가 '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' 고 판단한 것 일 뿐 'IMS 가 침술' 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닙니다.

3. 'IMS 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' 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,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입니다.

4. 기존 'IMS 학회 가이드 라인' 에 따라 IMS를 시행하시는 회원 분들은 한방측의 협박에 신경쓰지 말고 평소대로 시행해 주시되, 아래 사항을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1) IMS 시행 전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주십시오.
   Ex: 심부건 반사 여부, SLR test(Straight Leg Raise), Motor power 등
2)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 주십시오.
3) 시술 전 환자분들께 '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요법임' 을 미리 고지하여 주십시오.
4) 2008년 4월 28일 의료법 개정 전 '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' 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은 환자에게 IMS 시술료를 수납하시면 안됩니다.

5. IMS 건으로 한방측의 협박이나 공격을 당하신 분들은 의협 의료정책국 (02-6350-6532)으로 연락 주십시오. 의협이 함께 하겠습니다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#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26개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, 대한공공의학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